

사업재기계획서

1. 기업개요

| | | | | | |
|--------------|--|-----|--------------|-----|--|
| 기업체명 | | 대표자 | | 설립일 | |
| 업종 (주요제품) | | | 파산·면책 결정일 | | |

○ 부실(부도) 경위
 → 부실(부도)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임금 및 상거래 채권 정리 노력 등

2. 기업 채무현황 및 상환내역 (법인의 경우에 한함)

(단위 : 백만원)

| 순번 | 채무자명 | 채권기관 | 채무발생일 | 채무잔액 (이자미포함) | 채무구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1) 보증신청기업(법인) 또는 재단에 변제책임이 있는 기업(법인)의 채무를 기재 (금융거래확인서, 신용정보조회표 등으로 확인되는 채무 및 재단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무를 말함. 채무조정 등을 통해 면책되거나 재단의 채무감면절차에 따라 감면된 채무는 4번 항목에서 별도 기재)

(참고2) 채무구분란은 당해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는 “주채무”, 당해법인이 보증인으로서 부담해야하는 채무는 “보증채무”로 구분하여 기재 (보증채무의 경우 주채무자를 비고에 기재)

3. 보증신청 기업주 채무현황 및 상환내역 (대표자 등)

(단위 : 백만원)

| 순번 | 채무자명 | 지위 | 채권기관 | 채무발생일 | 채무잔액 (이자미포함) | 채무구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1) 보증신청기업(개인기업포함)의 대표자 및 실제경영자, 이하 재단에 변제책임이 있는 자의 채무 기재

(참고2) 비고란의 작성요령은 법인용과 동일 (예 : ##기업의 대위변제채무에 대하여 대표자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비고란에 주채무자인 “##기업” 기재)

4. 채무조정(면책) 받은 채무

(단위 : 백만원)

| 순번 | 조정(면책)기관 | 채무자명 | 조정(면책)결과 | 조정 (면책)일 | 원채무 | 조정받은채무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1) 법원, 신복위, 재단 등으로부터 채무조정, 면책, 감면 등을 통해 법적 변제 의무 종결이 확정된 채무 기재

(참고2) 비고란은 법원 사건번호, 신복위 통지서, 채무감면내역이 기재된 재단 문서번호 등 근거 기재

5. 보유재산, 행정처분 및 소송현황 등

① 소송현황(상거래채권 및 사해행위취소의 소 피소 관련 내용)

② 본인(구상채권기업 및 그 기업의 대표자)을 포함하여 직계가족(배우자, 직계비속) 및 관계사 보유 재산 현황

③ 사업관련 행정 및 형사처분 내역

※ 대 상 : 구상채권기업 및 그 기업의 구상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있는 대표자

